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6.

발 의 자 : 서명옥 · 최보윤 · 박충권
강선영 · 김정재 · 한지아
김예지 · 김소희 · 최수진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%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그런데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.2%이고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·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.8% 및 25.0%에 불과하였음. 또한,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이었고,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.1%에 그치는 실정으로,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%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4항 중 “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”를 “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

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4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. 다만,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그 추천비율이 위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의무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47條(政黨의 候補者推薦) ① ~ ③ (생 략)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(군지역을 제외하며,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)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 <신 설>	第47條(政黨의 候補者推薦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----- -----. <삭 제>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

제52조(등록무효) ① (생략)

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시·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. 다만,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·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·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

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

제52조(등록무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4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. 다만,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그 추천비율이 위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아니다.

③ · ④ (생략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